

□ (센터구축)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內(센터장: 주택건설공급과장)에
업무분장 및 전용 전화번호를 지정, 신고 접수 및 처리

□ (신고) 불법행위를 인지한 자는 전화, Fax 등을 통해 신고 가능

※ 전화[044-201-3379(감리), 4867(관리)], Fax(044-201-5684)

□ (운영) 센터 담당자가 전화, 팩스 등으로 신고되는 사안에 대하여
접수대장에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

□ (조치) 센터장은 신고 사항이 타당한 이유*가 있다고 판단되거나
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는,

* 신고내용에 대한 관련법령에의 위법성, 중대성, 시급성 등을 검토하고, 위법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○ 즉시, 관할 지자체(시·도 또는 시·군·구)에 해당 신고사항을 조사하여
보고하도록 문서로 조치(중앙→시·도 또는 시·군·구)

☞ 통보된 사건에 대해 지자체는 1개월 이내 조치 결과를 국토부에
보고토록 하고, 그 처리결과를 우리부에서는 민원인에게 통보

[업무처리 절차]

